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5-02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

판 결

사 건	2018가단58125 근저당권말소
원 고	[redacted]시
피 고	A
변 론 종 결	무변론
판 결 선 고	2019. 3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9. 4. 23. 접수 제66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5-02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 김현덕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5-02

[별지1]

별지목록

1. [redacted]남도 [redacted]군 [redacted] 대 327㎡

- 이상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관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5-02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관계

가.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'이사건 부동산'이라고 합니다)의 소유자인 소외 B [redacted]에 대하여 금7,096,400원의 지방세 체납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,

나.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를 B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.

2. 근저당권설정등기

가. 이 사건 부동산은 1999.04.0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[redacted]지방법원 1999.04.06. 접 수 제56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B 소유입니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1999.04.22.원인으로 1999.04.23. 접수 제6631호로 채권최고액 금4,000,000원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.

3. 소멸시효의 완성

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62조 제1항(채권, 재산권의 소멸시효)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계약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채권행사를 해야 하고, 만약 그 기간 내에 채권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은 위 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명백합니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설정계약이 이루어진 1999.04.23.부터 10년 이내인 2009.04.24.까지 행사해야할 것인바, 피고가 그 설정계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채권행사를 하지 않아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소멸시효는 2009.04.24.자로 완성되었습니다.

4. 결론

피고는 B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을 그 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에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